

特許法 전면 改定 推進

特許料 납부기간 30日로 短縮등

- ◎…… 特許廳은 특허제도를 현대화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工所權의 國제화……◎
-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특허법을 전면개정, 특허발명의 通常實施權許與 심……◎
- ◎……판제도를 폐지하고 裁定制度를 채택하기로 했다. ………………◎
- ◎…… 또 특허발명의 조속한 권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特許權設定등록에 따른……◎
- ◎……특허료 납부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

特許廳이 마련, 관계당국 및 관련 단체와 협의 중에 있는 특허법 개정안(시안)에 따르면 지금 까지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先使用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여하지 않거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심판제도보다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보장되는 裁定制度를 채택하기로 했다.

자기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通常實施權許與의 裁定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장차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物質特許制度에 대한 권리조정 장치로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利用 저촉 특허발명의 실시허여제도가 강제실시권의 일종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경제현실에서 볼 때 그 판단대상이 기술적인 사항보다는 對價의 결정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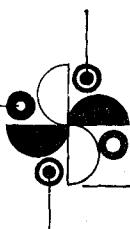
특허청은 또 特許查定된 발명의 조속한 權利化를 도모하기 위해 特許權設定 등록에 따른 特許料 납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

고 追納기간을 폐지하되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0일에 한하여 연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特許權 무효 또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準司法的인 爭訟 절차이기 때문에 심판청구인 자격에 관한 규정이 필수적이 아니라고 판단, 이해 당사자 유무의 審理로 인한 불필요한 노력 을 제거하기 위해 청구인 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工所權의 國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發明의 新規性 상실의 예외 특례 규정을 마련, 지난해 PCT(特許協力條約) 총회에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기간(1년 8개월)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후 출원인에게 보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한 점을 감안, 商工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 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특허청은 이미 마련된 특허청 개정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특허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짓고 내년부터는 이를 시행토록할 계획이다. ♦



閱覽所 늘려 資料活用 促進

WIPO 支援 尖端技術 50件도 調查提供

- ◎…… 特許廳은 지방특허열람소지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特許公報類 배……◎
- ◎……포획대등 특허기술자료의 산업 및 연구부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책……◎
- ◎……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特許廳은 올해 공보류를 배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수를 지난해의 31개 조합에서 53개 조합으로 증가시키고 15개 지방상공회의소에 특허자료열람소 설치를 권장, 각종 특허공보류를 보내주는 한편 자료 활용을 촉진키 위해 年 2회의 전담요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特許廳은 또 올해 美·日 등 9개 선진국의 특허공보류 17종과 1백50종의 과학기술도서 및 잡지 구입 등 특허기술자료 수집을 위해 2억원의 예산

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특허자료의 상호교환국간을 현재의 17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特許廳은 유엔 산하 공업소유권 전문기관인 WIPO(세계 知的 소유권기구)와 선진국 특허청의 협력을 얻어 올해중 國內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첨단기술 50건을 조사, 國내업체와 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제공하는 등 특허기술자료 활용을 촉진키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案) — (内)

第17回 發明教室

本會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와 아울러 發明人們간의 어려운 問題點들을 相互討論하여 對話를 通한 發明意欲鼓吹와 優秀發明을 創出하고자 다음과 같이 7月中 第17回 發明教室을 開講코자 하오니 많은 參加바랍니다.

- 一. 日 時 : 1985年 7月 13日(土) 午後 1시
- 一. 場 所 : 特許廳 研修室 (參加費 없이 教材無料提供)
- 一. 문의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연수부(557-1077/8)